2026년
집중안전점검
점검가이드



의료기관 유형

보 건 복 지 부

2026년
집중안전점검
점검가이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포털에 등록(‘24.4월)한 **2024년 의료기관 유형 점검가이드** 中 **의료법 관련 내용, 점검대상 등**을 **’ 25년 현재 기준에 맞게 보완**하였음

2026년 집중안전점검 점검가이드(의료기관)

차 례

제1절 개 요

1.1 목적 ····· 1
1.2 법적 근거 ····· 1
1.3 용어 정의 ····· 2
1.4 추진 체계 ····· 2
1.5 기본 원칙 ····· 3

제2절 집중안전점검 안전점검 기준

2.1 점검 대상 ····· 5
2.2 점검 분야 ····· 7
2.3 점검 인력 ····· 7
2.4 점검 개수 ····· 9
2.5 점검 장비 ····· 9
2.6 점검 결과 조치 ····· 11

제3절 집중안전점검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3.1 의료법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 14
3.2 건축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 32
3.3 소방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 50
3.4 전기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 72
3.5 가스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 93
3.6 승강기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 113

부록

[부록] 의료기관 유형 조치항목 ····· 124

제1절 개 요

제1절 개요

1.1 목적

○ 본 「집중안전점검 점검 가이드」는 집중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분야별 적정 점검 방법과 세부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점검대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법령에 의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본 점검 가이드에서 정하는 사항은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는데 추가·보완적으로 적용함

1.2 법적 근거

○ 집중안전점검 점검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 3을 따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2조의 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1.3 용어 정의 및 범위

○ 집중안전점검

-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정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전국 단위로 일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예방사업

○ 안전점검

-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충분한 경험과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을 통해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함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함
- 법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조산원 등으로 구분

  * 근거 : 의료법 제3조

1.4 추진체계

○ 「집중안전점검」 추진 총괄 역할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

No.	구 분	역 할
1	행정안전부	○ 「집중안전점검」의 총괄 ○ 집중안전점검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배포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 총괄, 중간·최종 결과 종합보고
2	중앙부처	○ 해당 중앙부처 소관「집중안전점검」총괄 ○ 해당 부처 추진계획 수립·통보, 부처 추진상황 총괄, 중간·최종 결과보고 ○ 해당 부처소관 점검대상 선정・점검, 분야별 점검 가이드라인 작성 등
3	지방자치단체	○ (총괄부서) 해당 지자체 대진단 총괄, 점검대상 조정, 합동점검계획 수립 ○ (실행부서) 해당 지자체 점검대상 선정, 자체 점검계획 수립, 점검・후속조치 등

1.5 기본 원칙

1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 실시

○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부처 · 지자체), 유관기관(공사·공단 등), 민간 전문가 등 2인 이상(점검책임자 포함) 합동점검 실시

- 주관기관은 반드시 타기관, 유관기관 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실시
- 지자체 · 유관기관 합동점검 시 점검일정 사전 조율을 위한 협의

2 개별법과의 중복점검 최소화

○ 집중안전점검과 개별법의 점검간 유사항목 반복 실시 및 기관간 중복점검 지양

- 최근 3개월 점검시설 대진단 대상에서 제외
- 중복점검 제거를 위한 점검 일정 · 대상 조정하여 중복점검 최소화

3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편의성 강화

○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핵심위주의 점검항목과 점검자 편의가 고려된 안전점검표 구성

-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위주의 점검항목으로 구성하여 점검자, 관련 기관의 편의성 강화
- 기존의 불필요한 점검항목을 관련 분야전문가 등의 의견검토를 통해 안전점검표의 단순화, 명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지양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험·핵심시설 위주 선정

○ 노후 시설물, 소규모 시설물, 생활밀접형 시설물, 개별법에서 소외된 시설물 집중선정

제2절 집중안전점검
안전점검 기준

2.1 점검 대상

2.1.1 점검 대상 현황

○ 의료기관 내 4년간(‘16~’20) 환자안전사고의 발생건수는 26,731건이며, 사고원인의 대다수는 낙상과 약물 오류이며, 그 외엔 검사, 진료재료의 오염 및 불량, 감염 순으로 나타났음



< 의료기관 사고 원인별 발생건수 >

구분	시설	발생건수	비율
1	낙상	12,144	
2	투약	8,068	
3	기타	2,365	
4	검사	1,580	
5	진 료 재 료 오염/불량	754	

< 의료기관 사고 원인별 발생건수 >

○ 낙상 사고 예방 등의 **환자 안전**과 이를 포함한 의료진, 환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건축 및 관련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

○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정상적 판단을 하기 힘든 환자 등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건물 내·외 소방시설의 점검이 필수적**이며, 화재 시 **대피를 위한 질서유지** 점검항목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병원 내에는 수술실, 연구원, 식당 등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가스분야의 점검**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대형병원의 경우 **승강기, 옹벽**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선택적 안전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2.1.2 점검 대상 선정 기준

○ 3층 이상 입원실 보유 요양병원, 복합건물 소재 요양병원 등을 선정

유 형	선정 기준
의료기관	▸ 지자체 별 의료기관 취약요인을 감안하여 아래 대상에서 점검필요 의료기관 선정(총 650개 내외) ▸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221개소) ▸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하거나 복합건물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 '25년 내진성능 실태조사(9~12월)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 의료기관 ▸ '25년 집중안전점검 시(4~6월) 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의료기관 ▸ '25년 민생중점시설 안전점검(11~12월) 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의료기관 ▸ 지자체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2.1.3 점검대상 구분

○ 중앙부처 직접 수행 대상, 지자체 위임수행, 지자체 자체수행 대상으로 구분

No.	구 분	비 고
1	중앙부처 직접 수행	○ 중앙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에서 직접 관리 또는 직접 점검하는 시설
2	지자체 위임 수행	○ 중앙부처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설로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정하여 통보하는 시설
3	지자체 자체 수행	○ 상기 1, 2(중앙부처, 지자체 위임)외에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시설

2.2. 점검 분야

- 의료기관의 재해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분야와 선택분야로 구분

유 형	필수분야	선택분야
의료기관	의료법,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2.3. 점검 인력

2.3.1 점검 인력 자격 기준

○ 집중안전점검 점검 인력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항목과 같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른 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건설안전, 소방, 가스 등)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해당분야(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 기계 등)의 기사 취득 후 경력이 4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인 사람

구분	자격요건
건축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소방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소방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전기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전자 직무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가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가스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승강기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인정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의 중급기술인 이상 포함

2. 해당분야(건축, 토목, 소방, 의료 등) 안전점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보건소 관계자 포함

③ 위생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3.2 합동점검

○ 모든 점검대상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부처·지자체), 유관기관(공사공단 등), 민간전문가 등 상기의 점검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2인 이상(점검책임자 포함) 합동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함

2.4 점검 개수

○ 점검개수는 1일(8시간 기준) 최대 10개 이내로 한정함

- 단,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1일 최대 점검개수는 해당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5 점검 장비

○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은 육안조사를 포함하여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실시

○ 점검 장비 항목은 다음의 세부 내역을 기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춰 활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분 야	점검장비	비 고
공용	안전복(조끼)	조사단 신체 보호용
	휴대용랜턴	점검대상물의 내부 확인용
	무선송수신기	조사단 점검시 무선 송수신용
	태블릿PC	데이터 관리 및 조사결과 입력용
	줄자	점검대상물의 내외부 거리 측정용
	공구셋트	소방시설 점검용(분해, 결합등)

건축/토목 분야	간단한 측정장비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의한 슈미트헤머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 필수
	안전모	작업자 신체보호
	작업복	작업자 신체보호 및 작업능력
	작업화	못, 충격 등에 의한 작업자 신체보호
소방분야	방수압력측정계	소화설비의 방수압력 측정용
	헤드결합렌치	S/P설비 헤드 점검용
	기동관누설시험기	하론, CO2설비 기동관 누설 시험용
	연기감지기시험기	열 및 연기감지기 점검용
	음량계	소방경보설비의 dB 측정용
	조도계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의 조도 측정
전기분야	누설전류측정기	절연의 적정 유지 상태를 확인
	절연저항 측정기	전기누전 측정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온도분포를 측정하여 절연·열화·과부화 여부 확인
가스분야	가스누출검지기	가스 누출 측정
	가스 압력계	가스 압력 측정
	안 전 밸 브 성능시험기	가스안전밸브 성능 측정
위생분야	체온계	고열, 바이러스 체크용
	산소농도측정기	산소결핍 측정 및 체크
	유해가스측정기	유해가스 측정 및 체크

※ 상기 점검장비는 안전점검시 필요한 장비를 참고용 예시로 나열한 것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2.6 점검 결과 조치

2.6.1 점검결과의 상태 및 조치내용

○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는 점검대상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호, 주의, 불량으로 구분되며 각 상태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함

구 분	상 태	조치내용
양 호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조치사항 없음
주 의	❍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결함이 발견된 상태	❍ 적절한 현장시정 조치 또는 보수·보강 조치 실시
불 량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 긴급안전조치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후속 조치 요청

2.6.2 점검 결과 시스템 입력

○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는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에 대해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 참조

제3절 집중안전점검
안전점검표

제3절 집중안전점검 안전점검표

의료기관 유형 총괄 안전점검표			
점검일시	2026년 월 일		
건 물 명			
점검장소 (도로명 주소)			
면 적	㎡	**층수** (지상/지하)	

	점검분야	**소 속**	**직 위**	**성 명**	**점검여부 (✔)**
점검자				(인)	
				(인)	
				(인)	
				(인)	
				(인)	
확인자 (소유자)				(인)	

※ 확인자 :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점검시 소유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시설물의 점유자·관리자가 서명 후 그 이후*

▸ 민간건축물인 경우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설명(보고) 후 조치

▸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

3.1 의료법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의료기관 유형 의료법 분야 안전점검표

업체명		점검일시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점검책임자			(인)
점검참여자			(인)
			(인)
			(인)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비고	코드
		양호	주의	불량		
입원실	입원실 지하층 설치 여부 (지하층 설치시 부적합)					의료법 01
	3층 이상 입원실 내화구조 시공여부					의료법 02
	입원실의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기준 준수여부					의료법 03
정전대비 시설	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					의료법 04
	중환자실 무정전 시스템 설치 여부					의료법 05
	수술실 예비전원설비 설치 여부					의료법 06

안전시설 (요양병원에만 해당)	휠체어·병상 이동공간 확보 여부					의료법 07
	침대용 엘리베이터·층간 경사로 설치 여부					의료법 08
	문턱 경사로 설치 여부					의료법 09
	안전 손잡이 설치 여부					의료법 10
	비상연락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의료법 11
	요양병원 욕실 시설규격 준수 여부					의료법 12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 안전규정 준수여부					의료법 13
신체보호대	신체보호대 사용기준 준수 여부					의료법 14
	응급상황시 결박 해제가 용이한지 여부					의료법 15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이 연 1회 이상 이루어지는지 여부**(요양병원에만 해당)**					의료법 16

* 의료법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제39조의4, 제39조의6,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따라 점검
* 의료기기 항목은 의료기기안전관리 지침 참고

코드	의료법 01	구분	입원실
점검항목	입원실 지하층 설치 여부 (지하층 설치시 부적합)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지하층에 입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주의		
	불량		○ 지하층에 입원실이 설치되거나 운영 될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코드	의료법 02	구분	입원실
점검항목	3층 이상 입원실 내화구조 시공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입원실이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한 내화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양호
	주의		❍ 입원실이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한 내화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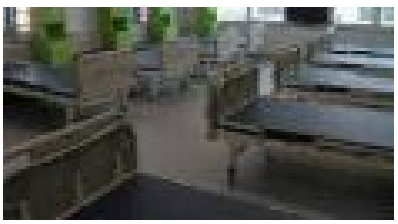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코드	의료법 03	구분	입원실
점검항목	입원실의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기준 준수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입원실의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입원실의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1. 입원실

나.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코드	의료법 04	구분	정전대비 시설
점검항목	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 및 적합성 판단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병원급 의료기관 내 정전대비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 및 가동시 공급전력의 적합한 경우, 양호
	주의		❍ 병원급 의료기관 내 정전대비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 및 가동시 공급전력의 부적합한 경우, 주의
	불량		❍ 병원급 의료기관 내 정전대비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8. 자가발전시설

-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원표시판 확인, 보건소에 제출된 시험성적서와 동일한지 여부 확인 필요

코드	의료법 05	구분	정전대비 시설
점검항목	중환자실 무정전 시스템(UPS)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중환자실 무정전 시스템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양호
	주의		○ 중환자실 무정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주의
	불량		○ 중환자실 무정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 중환자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코드	의료법 06	구분	정전대비 시설
점검항목	수술실 예비전원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축전지 또는 발전기, 내장 축전지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양호
	주의		❍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축전지 또는 발전기, 내장 축전지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부적절하게 방치되어 있거나, 일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주의
	불량		❍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축전지 또는 발전기, 내장 축전지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3.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코드	의료법 07	구분	안전시설 (요양병원에만 해당)
점검항목	휠체어·병상 이동공간 확보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복도에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복도에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물건 등의 적치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주의
	불량		❍ 위급 상황시 휠체어 또는 병상의 이동이 공간 및 시설 구조상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나.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드	의료법 08	구분	안전시설 (요양병원에만 해당)
점검항목	침대용 엘리베이터·층간 경사로 설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침대용 엘리베이터·층간 경사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침대용 엘리베이터·층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 2층 이상인 건물이나 침대용 엘리베이터·층간 경사로가 둘 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20. 그 밖의 시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다. 별표 3 제20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코드	의료법 09	구분	안전시설 (요양병원에만 해당)
점검항목	문턱 경사로 설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문턱 경사로가 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문턱 경사로가 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라.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코드	의료법 10	구분	안전시설 (요양병원에만 해당)
점검항목	안전 손잡이 설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 안전손잡이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 안전손잡이가 규정에 맞게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라.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코드	의료법 11	구분	안전시설 (요양병원에만 해당)
점검항목	비상연락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점검결과	양호		❍ 입원실, 화장실, 욕실의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양호
	주의		❍ 입원실, 화장실, 욕실의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주의
	불량		❍ 입원실, 화장실, 욕실의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마.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코드	의료법 12	구분	안전시설 (요양병원에만 해당)
점검항목	요양병원 욕실 시설규격 준수 여부		

점검결과	양호		❍ 요양병원 욕실 시설 규격이 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을 준수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요양병원 욕실 시설 규격이 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바. 요양병원의 욕실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코드	의료법 13	구분	안전시설 (요양병원에만 해당)
점검항목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 안전규정 준수여부		

점검결과	양호		❍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가 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을 준수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가 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사.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드	의료법 14	구분	신체보호대
점검항목	신체보호대 사용기준 준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신체보호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으면 양호 ❍ 신체보호대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으면 양호 ❍ 신체보호대에 대한 처방과 동의가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양호
	주의		❍ 상기 양호 기준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의
	불량		❍ 상기 양호 기준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면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코드	의료법 15	구분	신체보호대
점검항목	응급상황시 결박 해제가 용이한지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응급상황에서 신체보호대를 쉽제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으면 양호 ❍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에 대한 주기적 관찰·기록이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면 양호 ❍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부위를 줄이기 위한 환자 상태 평가가 의료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양호
	주의		❍ 상기 양호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의
	불량		❍ 상기 양호 기준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면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

4.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나. 의료인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다.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코드	의료법 16	구분	신체보호대 (요양병원에만 해당)
점검항목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이 연 1회 이상 이루어지는지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의 교육대상(의료인 및 요양병원 종사자)이 규정에 맞게 선정되어 있으면 양호 ❍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의 교육 내용(신체보호대 정의, 사용 방법 및 준수 사항,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등)이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상기 양호 기준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의
	불량		❍ 상기 양호 기준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면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

6.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정의, 사용 방법 및 준수 사항

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3.2 건축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의료기관 유형 건축분야 안전점검표

업체명		점검일시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점검책임자			(인)
점검참여자			(인)
			(인)
			(인)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비고	코드
		양호	주의	불량		
안전관리실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적정 여부					건축 0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행 여부					건축 02
주요 구조부 안전성	보, 슬래브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건축 03
	기둥, 내력벽, 주 계단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건축 04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 여부					건축 05
	주요 강재 및 접합부 손상 여부					건축 06

건축마감	지붕 누수 및 손상 여부					건축 07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건축 08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비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건축 09
	시설 외부 및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여부					건축 10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여부					건축 11
	마감재 연결부 손상 상태옹벽, 석축, 담장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건축 12
	환기구의 덮개 설치 및 손상 여부					건축 13
부대시설	상·하수도 주변 시설 손상 및 누수 여부					건축 14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여부					건축 15
	옹벽, 석축, 담장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건축 16

코드	건축 01	구분	안전관리실태
점검항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관리주체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으면 양호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를 통해 제출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관리주체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주의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를 통해 제출되지 않았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

①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해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은「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코드	건축 02	구분	안전관리실태
점검항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행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면 양호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이행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면 주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이행되고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반)**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② 법 제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드	건축 03	구분	주요 구조부 안전성
점검항목	보, 슬래브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0.3mm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
	주의		❍ 0.3mm이상~ 0.5mm미만의 균열이 전체부재의 5% 미만인 경우 부분적(약 20% 미만)으로 박락이 있는 경우
	불량		❍ 0.5mm이상의 균열이 있는 경우 심각한 박락이 있거나 광범위하게 박락이 있는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52조(보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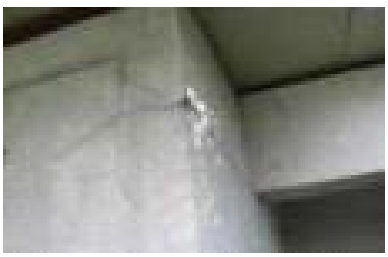
-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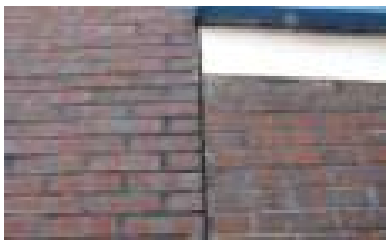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코드	건축 04	구분	주요 구조부 안전성
점검항목	기둥, 내력벽, 주 계단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0.3mm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 구조나 내화 목적의 피복재 박락이 없는 경우
	주의		❍ 0.3mm이상~ 0.5mm미만의 균열이 전체부재의 5% 미만인 경우 부분적(약 20% 미만)으로 박락이 있는 경우
	불량		❍ 0.5mm이상의 균열이 있는 경우 심각한 박락이 있거나 광범위하게 박락이 있는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54조(내력벽의 구조)** -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코드	건축 05	구분	주요 구조부 안전성
점검항목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의		○ 지반침하는 없으나 잔 균열(중대 균열제외)이 있는 경우
	불량		○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이 있는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4조(안전성)**

①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코드	건축 06	구분	주요 구조부 안전성
점검항목	주요 강재 및 접합부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변형 및 부식,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의		○ 변형은 없으나 부식, 잔 균열(중대 균열제외)이 있는경우
	불량		○ 변형이 발생했거나 철골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5조(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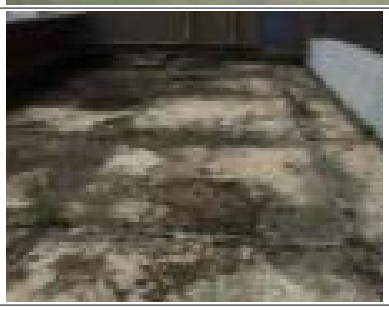
① 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코드	건축 07	구분	건축마감
점검항목	지붕 누수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손상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거나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옥상 배수드레인이 막힌 상태(청소상태 불량)
	주의		○ 방수층 노후화가 진행 중이나 누수는 없는 상태 ○ 상당부분 보수가 필요한 상태
	불량		○ 누름 콘크리트 손상 및 누수가 발생한 상태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 **제11조 (적재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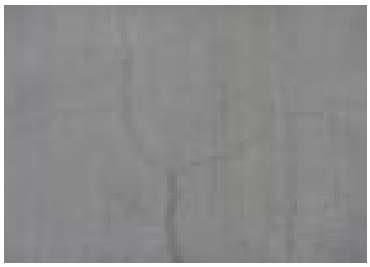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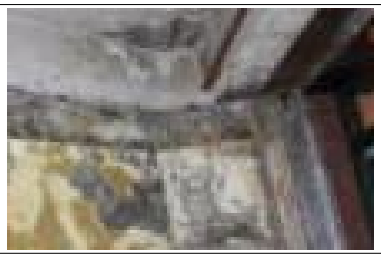
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은 별표 3(허용응력도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별표 4의 값으로 한다. 다만,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중의 집중・진동・충격등을 고려하여 당해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창고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이 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별표 4의 값을 적용하는 경우의 복도 및 계단의 적재하중은 인접한 시설의 적재하중에 따른다. 다만, 특히 이동량이 많은 부분에서는 별표 4의 5란의 이동식 집회장의 적재하중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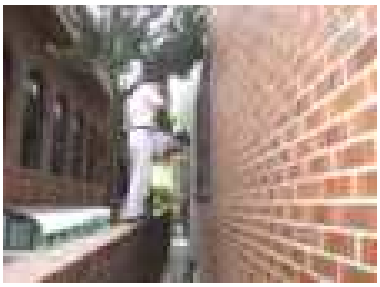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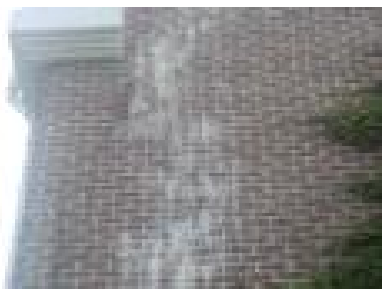
④ 지붕에 무거운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하중을 조사하여 적재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코드	건축 08	구분	건축마감
점검항목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균열 또는 박락이 없는 경우
	주의		○ 폭 0.1mm 이상 ~ 0.2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 깊이 1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불량		○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 깊이 20mm 이상의 박락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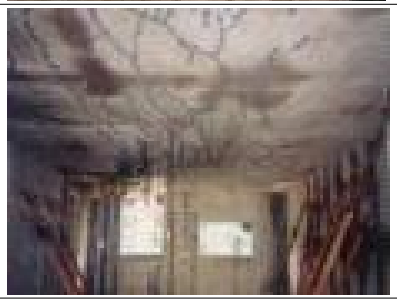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코드	건축 09	구분	건축마감
점검항목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비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균열 또는 박락이 없는 경우
	주의		❍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균열이 발생한 면적률이 10% 이상 ~ 20% 미만인 경우 ❍ 타일, 석재가 박락(파손)된 부위의 면적률이 5% 이상 ~ 10% 미만인 경우
	불량		❍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균열이 발생한 면적률이 20% 이상인 경우 ❍ 타일, 석재가 박락(파손)된 부위의 면적률이 10% 이상인 경우 ❍ 외벽 콘크리트에 녹물이 흘러나와 얼룩이 발생하거나 철근이 노출·부식된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코드	건축 10	구분	건축마감
점검항목	시설 외부 및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당초 시설 그대로 추가 하중 시설이 없는 경우
	주의		○ 당초 시설에 추가 하중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육안상 위험징후가 없어 보이는 경우
	불량		○ 당초 시설에 추가 하중 시설이 과하중이거나 위험징후가 있는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 **제11조 (적재하중)**

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은 별표 3(허용응력도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별표 4의 값으로 한다. 다만,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중의 집중·진동·충격등을 고려하여 당해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창고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이 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별표 4의 값을 적용하는 경우의 복도 및 계단의 적재하중은 인접한 시설의 적재하중에 따른다. 다만, 특히 이동량이 많은 부분에서는 별표 4의 5란의 이동식 집회장의 적재하중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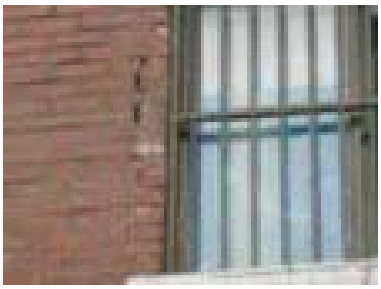
④ 지붕에 무거운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하중을 조사하여 적재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코드	건축 11	구분	건축마감
점검항목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녹슨 부위가 없고 모든 부위에 도장이 되어있는 경우
	주의		○ 일부 녹이 발생되고 도장이 미비한 경우
	불량		○ 녹이 발생하여 강재기능 저하 우려가 있고 도장이 불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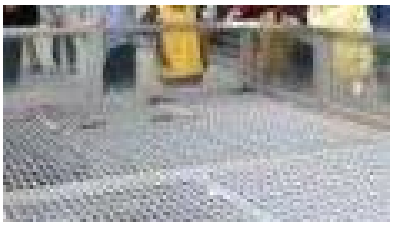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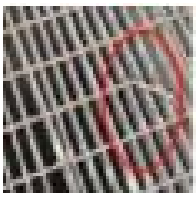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코드	건축 12	구분	건축마감
점검항목	마감재 연결부 손상 상태옹벽, 석축, 담장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마감재(광고판, 파라펫 포함) 연결부 등이 단단히 되었거나 마감이 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없는 경우
	주의		○ 마감재(광고판, 파라펫 포함) 연결부 등이 녹이 쓰는 등 보수가 필요하나 현재 사고위험은 없는 경우
	불량		○ 마감재(광고판, 파라펫 포함) 연결부 등이 불량하거나 마감이 불량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코드	건축 13	구분	건축마감
점검항목	환기구의 덮개 설치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환기구 덮개의 처짐 및 변형, 부식, 탈락 등이 없는 경우
	주의	 	○ 환기구 덮개나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에 미미한 변형, 파손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불량		○ 비규격이거나 심각한 변형 및 파손, 탈락이 발생하여 즉시 교체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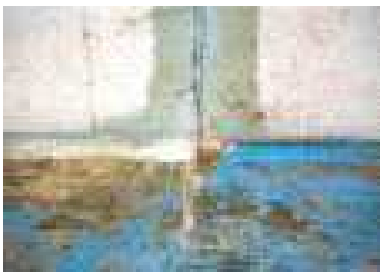
○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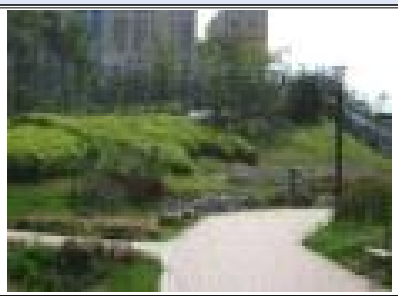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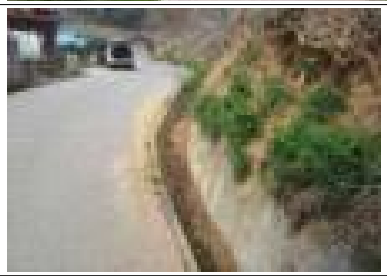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코드	건축 14	구분	부대시설
점검항목	상·하수도 주변 시설 손상 및 누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상·하수도 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가 없는 경우
	주의		○ 상·하수도 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가 있으나 주변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불량		○ 상·하수도 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로 인하여 주변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코드	건축 15	구분	부대시설
점검항목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인장균열 및 침하발생이 없고, 사면내 지하수 용출이 없어 붕괴의 위험이 없는 경우 ❍ 들뜬 암석이 없어 낙석발생의 위험이 없는 경우
	주의		❍ 배수 상태가 좋지 않고, 지하수가 용출되는 등 일부 구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불량		❍ 인장균열 및 침하가 발생되고, 급격한 용출수로 비탈면의 붕괴 위험이 있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99조 (토석붕괴 위험 방지)**

-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8조 (중대한 결함)**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0.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코드	건축 16	구분	부대시설
점검항목	옹벽, 석축, 담장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균열이나 배부름 등 변형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 배수공 내부가 깨끗하거나 우천시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 있는 경우
	주의		❍ 미세균열(중대 균열 제외)이 있고 약간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 침하나 활동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있는 경우 ❍ 담장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였거나 기울임이 확인되는 경우
	불량		❍ 중대 균열(관통균열, 전단균열, 상하부에 걸쳐 연결된 종균열 등)이 있거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심해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침하나 활동 정도가 심각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수공이 없거나 거미줄 또는 이물질이 있고 배수된흔적이 없는 경우 ❍ 담장이 많은 균열 또는 기울임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2조 (중대한 결함)**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1999. 6. 8., 2002. 9. 6., 2008. 2. 29.>

9.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10.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11.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2.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결함

3.3 소방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의료기관 유형 소방분야 안전점검표

업체명		점검일시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점검책임자			(인)
점검참여자			(인)
			(인)
			(인)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비고	코드
			양호	주의	불량		
소화설비	소화기	의료기관 내 소화기 비치 여부					소방 01
		소화기 접근 용이 및 표지부착 여부					소방 02
		소화기 교체주기 적정성 여부					소방 03
		소화기 안전핀 및 지시압력계 적정 여부					소방 04
	옥내소화전	소화전함 개방 시 장애물 여부 및 노후, 파손, 변형 여부					소방 05
		소화전함 내 호스 및 노즐 관리상태 적정 여부					소방 06
		소화전함 위치표시등의 점등 여부					소방 07
	스프링클러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여부					소방 08

		헤드의 파손 및 탈락이 없는 정상 상태 여부					소방 09
		헤드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여부					소방 10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의료기관 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여부					소방 1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감지기·지구음향장치 설치여부					소방 12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 여부					소방 13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여부					소방 14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 설치 장소의 적정 여부					소방 15
	유도등	유도등 및 유도표지 탈락, 파손, 변형 여부 및 상시 점등 여부					소방 16
		유도등 및 유도표지 식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여부					소방 17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 여부					소방 18
	방화구획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방해되는 물건이 없는지 여부					소방 19
	대피통로	대피통로 복도, 계단에 장애물 및 물건 적치 여부					소방 20

※ 소방분야 안전점검표 구분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목록 참조

코드	소방 01	구분	소화설비 - 소화기
점검항목	의료기관 내 소화기 비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의료기관 내 소화기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의료기관 내 소화기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제9조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코드	소방 02	구분	소화설비 - 소화기
점검항목	소화기 접근 용이 및 표지부착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분말소화기(3.3kg)가 보행거리 20m 이내 비치되어 있으면 양호 ❍ 소화기 위치표지가 소화기 뒤 벽면에 부착되어 있거나 소화기 받침대에 소화기 표시가 있으면 양호
	주의		❍ 분말소화기(3.3kg)가 보행거리 20m 이내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소화기 위치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탈색된 상태이면 주의 (사진 좌)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6항 ❍ **소화기 위치표지** -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소화기 점검표 예시 

코드	소방 03	구분	소화설비 - 소화기
점검항목	소화기 교체주기 적정성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으면 양호 ❍ 소화기가 제조연월일로부터 10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양호
	주의		❍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초과되었으면 주의 ❍ 소화기가 제조연월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2**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함 - 분말소화약제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함 ❍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장** -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검사를 실시하면 됨 - 성능확인검사 기간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함

코드	소방 04	구분	소화설비 - 소화기
점검항목	소화기 안전핀 및 지시압력계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소화기의 안전핀이 정상적으로 꽂혀있으면 양호 ○ 소화기의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이면 양호 ○ 소화기의 압력계가 정상 범위보다 약간 오른쪽의 높은 압력을 지시해도 양호
	주의	 	○ 소화기의 안전핀이 이탈되어있으면 주의 ○ 소화기의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 왼쪽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제3조(정의)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코드	소방 05	구분	소화설비 – 옥내 소화전
점검항목	소화전함 개방 시 장애물 여부 및 노후, 파손, 변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소화전함 개방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이면 양호 ❍ 소화전 외관상태가 노후, 파손, 변형 등이 없는 상태이면 양호
	주의		❍ 소화전함 개방에 장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어 정상적 개방이 되지 않으면 주의 ❍ 소화전 외관상태가 노후, 파손, 변형 등이 있는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 **제1항 제1호 1.** -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 **제3항 제1호 1.** -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코드	소방 06	구분	소화설비 – 옥내 소화전
점검항목	소화전함 내 호스 및 노즐 관리상태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소화전함 내에 소방호스 및 노즐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호스걸이 등에 관리되고 있으면 양호 ❍ 소방호스에 노즐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소방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호스가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소방호스에 관창(노즐)이 분리되어 있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옥내소화전 구성품 - 옥내소화전 함 내부에는 앵글밸브, 소방호스, 관창(노즐)이 구성되어 있음 - 앵글밸브에 소방호스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함	

코드	소방 07	구분	소화설비 – 옥내 소화전
점검항목	소화전함 위치표시등의 점등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면 양호
	주의		❍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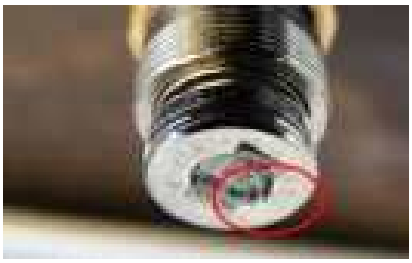
❍ **제3항 제1호 1.**

-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제3항 제2호 1.**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코드	소방 08	구분	소화설비 – 스프링 클러
점검항목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되어있으면 양호
	주의		○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되어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코드	소방 09	구분	소화설비 – 스프링 클러
점검항목	헤드의 파손 및 탈락이 없는 정상 상태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스프링클러 헤드의 외관이 파손 및 탈락 없이 정상이면 양호 ❍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장애물이 없으면 양호
	주의		❍ 스프링클러 헤드의 외관이 파손 및 탈락 되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주의 ❍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장애물이 없으면 양호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헤드의 살수 장애유발 방지** - 헤드가 파손 또는 탈락되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 한 경우 스프링클러로부터 방사되는 소화수가 화재지점까지 도달할 수 없어 화재를 진압할 수 없음

코드	소방 10	구분	소화설비 – 스프링 클러
점검항목	헤드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정상 작동이 가능한 상태면 양호
	주의		❍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조명기구 등과 같은 장애물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10조 ⑦ ❍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8. 12. 15. >

코드	소방 11	구분	경보설비 –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점검항목	의료기관 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의료기관 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 발신기 설치 높이가 설치 높이가 0.8M 이상 1.8M 이하이면 양호 ❍ 누름스위치를 누른 경우 수신기 경계구역 표시등, 경종, 시각경보장치 등 각종 장치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주의		○ 의료기관 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작동 하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2.15.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코드	소방 12	구분	경보설비 –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점검항목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감지기·지구음향장치 설치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의료기관 내 감지기·지구음향장치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의료기관 내 감지기·지구음향장치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불량 ❍ 감지기·지구음향장치의 표면에 페인트등 이물질 부착되어 있으면 불량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코드	소방 13	구분	피난구조설비 – 피난 기구
점검항목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양호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가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로부터 멀거나 보기 어려우면 주의 ○ 피난기구의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 피난기구의 사용방법을 표시하는 표지가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로부터 멀거나 보기 어려우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코드	소방 14	구분	피난구조설비 – 피난 기구
점검항목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가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았거나 흔들림이 있으면 주의 ❍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가 상당한 부식이 진행된 상태이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코드	소방 15	구분	피난구조설비 – 피난 기구
점검항목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 설치 장소의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피난기구와 그 고정장치가 계단 등 피난시설로부터 이격되고, 유효한 개구부에 설치 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피난기구와 그 고정장치가 계단 등 피난시설로부터 이격되고, 유효한 개구부에 설치 되어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코드	소방 16	구분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점검항목	유도등 및 유도표지 탈락, 파손, 변형 여부 및 상시 점등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유도등이 반듯하게 고정상태이면 양호 ❍ 유도등 상시 점등상태이면 양호
	주의		❍ 유도등이 탈락상태이면 주의 (사진 좌) ❍ 유도등 상시 소등상태이면 주의 (사진 우)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코드	소방 17	구분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점검항목	유도등 및 유도표지 식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유도등이 반듯하게 고정된 상태이면 양호 ○ 유도등 상시 점등상태이면 양호
	주의		○ 유도등이 탈락상태이면 주의 ○ 유도등 상시 점등되지 않거나 점등에 이상이 있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코드	소방 18	구분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점검항목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각 유도등의 높이 등 설치 위치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면 양호 ○ 각 유도등의 피난안내 방향이 피난층 및 옥상광장등 적정하면 양호
	주의		○ 각 유도등의 높이 등 설치 위치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의 ○ 각 유도등의 피난안내 방향이 적정하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코드	소방 19	구분	피난구조설비 – 방화구획
점검항목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방해되는 물건이 없는지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방화문 앞 적치물 등이 없어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상태이면 양호
	주의		❍ 방화문 앞 적치물 등으로 인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의 방화문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이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코드	소방 20	구분	피난구조설비 – 대피통로
점검항목	대피통로 복도, 계단에 장애물 및 물건 적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복도, 계단에 장애물 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지 않으면 양호
	주의		❍ 복도, 계단에 장애물 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면 대피에 방해를 주는 상태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4 전기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의료기관 유형 전기분야 안전점검표

업체명		점검일시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점검책임자			(인)
점검참여자			(인)
			(인)
			(인)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비고	코드
			양호	주의	불량		
전기 기계 기구	간판	간판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 01
		간판 인출선 적정 시설 여부					전기 02
	조명 시설	조명시설의 충전부 노출 여부					전기 03
		적정전선 사용 및 노후 열화 손상 여부 확인					전기 04
		옥외 시설 조명기구, 방전용안정기, 콘센트 방수 여부					전기 05
전기 설비	인입구 배선	규격 전선의 사용 여부					전기 06
		전선 접속 상태					전기 07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전기 08
		분전반상태 및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전기 09
	옥내 배선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기 10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전기 11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전기 12
		보행로 전선 노출 여부					전기 13
	누전 차단기 및 개폐기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전기 14
		누전차단기 열화 및 손상 여부					전기 15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전기 16
		개폐기 결선 상태					전기 17
	배전반	배전반 커버 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밀봉여부					전기 18
		배전반 접지용 콘센트 사용여부					전기 19

코드	전기 01	구분	전기기계기구 - 간판
점검항목	간판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간판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가 정상설치 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간판에 누전차단기가 정상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간판에 지락이 생겼을 때 누전차단기에 의해 전로가 자동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그림〉 누전차단기(예시)

1.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판단기준 제 41조>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코드	전기 02	구분	전기기계기구 - 간판
점검항목	간판 인출선 적정 시설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인출선이 배선과 직접 접속하게 시설되었으면 양호 ❍ 300/300V 편조 고무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적합하게 시설되었으면 양호
	주의		❍ 인출선이 배선과 직접 접속하지 않게 시설되었으면 주의 ❍ 300/300V 편조 고무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시설 되었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2. 간판 인출선은 이동전선에 준하여 시설(방습, 캡타이어코드, 케이블)여부 **<내선규정 제 3325-6>** □ 전기간판, 정원등 등에 부속하는 전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되어야 한다. (1) 전기간판의 인출선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인출선은 배선과 직접 접속할 것. 다만, 시공시 부득이한 경우는 비를 맞지 않도록 시설된 로제트, 콘센트, 리셉터클, 소켓 등으로 접속할 수 있다. 나. 인출선 또는 이동전선에 준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표 3310-1에 적합한 300/300V 편조 고무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짧게 시설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출선의 길이가 1m 이하일 경우는 선부착 방수소켓으로 시설할 수 있다.

코드	전기 03	구분	전기기계기구 - 조명시설
점검항목	조명시설의 충전부 노출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등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양호
	주의		○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등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주의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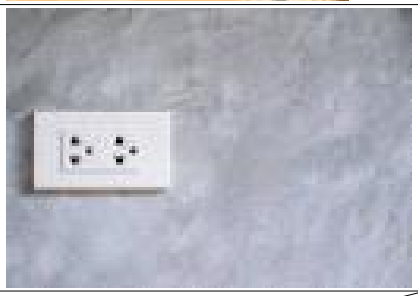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1. 조명시설의 충전부 노출이 없도록 시설 여부 **<판단기준 제 172조의 1>**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또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 중 전기풍로 등 그 충전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부분이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코드	전기 04	구분	전기기계기구 - 조명시설
점검항목	적정전선 사용 및 노후 열화 손상 여부 확인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전선구 또는 이동전선에 단면적 0.75㎟ 이상의 고무코드 또는 캡다이어케이블이 사용되었으면 양호 ❍ 전선에 노후, 열화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양호
	주의		❍ 전선구 또는 이동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고무코드 또는 캡다이어케이블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주의 ❍ 전선에 노후, 열화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었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2. 전선구 또는 이동전선은 단면적 0.75㎟이상의 고무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 사용 여부 **<판단기준 제 197조의 1>** □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전구선은 고무코드 또는 0.6/1kV EP고무 절연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전구선에는 단면적이 0.75㎟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이동전선은 고무코드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 것일 것.

코드	전기 05	구분	전기기계기구 - 조명시설
점검항목	옥외 시설 조명기구, 방전용안정기, 콘센트 방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비를 맞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기구, 방전등용 안정기류 및 콘센트에 방수형 제품이 사용되었거나 방수장치가 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비를 맞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기구, 방전등용 안정기류 및 콘센트에 방수형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방수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3. 옥외에 시설하는 조명기구, 방전용 안정기, 콘센트의 방수형 여부 <내선규정 제 3385-5> □ 전문상점의 조명기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조명기구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2) 전문상점의 지붕이 개폐되는 부분 또는 비를 맞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기구, 방전등용 안정기류 및 콘센트에는 방수형을 사용하거나 방수장치를 할 것. (3) 조명기구의 지표상 높이는 그 하단을 다음의 값 이상으로 할 것.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5m(노단은 4.5m),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는 3m(노단은 2.5m).

코드	전기 06	구분	전기설비- 인입구배선
점검항목	규격 전선의 사용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저압 가공인입선이 인장강도 2.30kN이상의 것일 경우 양호 ❍ 지름 2.6㎜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인 경우 양호
	주의		❍ 저압 가공인입선이 인장강도 2.30kN미만의 것일 경우 주의 ❍ 지름 2.6㎜ 미만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인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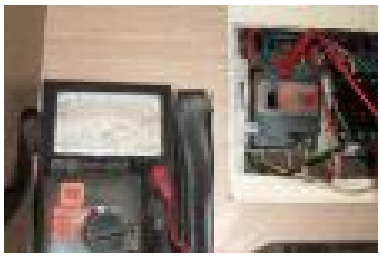
1. 가공인입선 절연전선(단면적 4㎟이상) 사용여부 (절연전선(DV, OW),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

<판단기준 제 100조>

□ 저압 가공인입선은 제 79조부터 제84조까지.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인장강도 1.25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2㎜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코드	전기 07	구분	전기설비- 인입구배선
점검항목	전선 접속 상태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전선 외관 검사 및 전기테스터기 사용 시 문제가 없는 경우 양호
	주의		○ 전선 외관 검사 및 전기테스터기 사용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서로 다른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

(1) 애자사용 배선과 다른 배선방법과의 사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배선방법의 배선상호를 접속하는 경우는 박스, 커플링 및 커넥터 등 적당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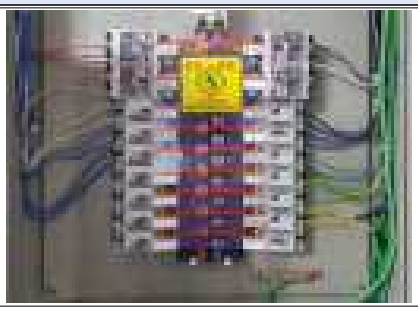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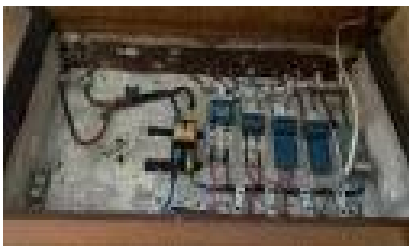
※ 근거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매뉴얼」<내선규정 제2210-2>

코드	전기 08	구분	전기설비- 인입구배선
점검항목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전선 외관 검사시 피복 손상이 없는 정상 상태이면 양호
	주의		○ 전선 외관 검사시 피복 손상이 있어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2) 서로 다른 배선 상호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부분을 손상하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접속개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근거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매뉴얼」<내선규정 제2210-2>

코드	전기 09	구분	전기설비- 인입구배선
점검항목	분전반상태 및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분전반의 상태가 육안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면 양호 ○ 배선공사가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어 시설되었으면 양호
	주의		○ 분전반의 상태가 육안점검 결과 오염, 손상, 절단 등의 이상이 발견되면 주의 ○ 배선공사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이행되어 시설되었다고 판단되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저압 옥내배선은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 또는 표에서 정하는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시설장소 \ 사용전압		400V 미만	400V 이상
점검이 쉬운 장소	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기타 장소	애자사용공사·버스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셀룰라덕트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기타 장소	애자사용공사	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라덕트공사	

코드	전기 10	구분	전기설비- 옥내설비
점검항목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이 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인 경우 양호 ❍ 도체의 단면적이 1㎟이상의 미네널 인슈레이션(MI)케이블인 경우 양호
	주의		❍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이 단면적 2.5㎟미만의 연동선인 경우 주의 ❍ 도체의 단면적이 1㎟미만의 미네널 인슈레이션(MI)케이블인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1. 옥내배선 최소 굵기 2.5㎜이상 여부

<판단기준 제 16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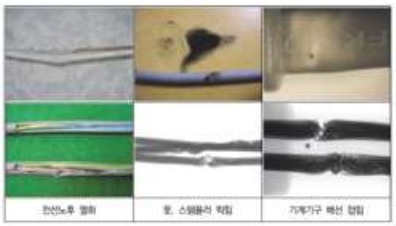
□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 또는 도체의 단면적이 1㎟이상의 미네널 인슈레이션(MI)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미만의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광표시 장치,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이상의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과전류 발생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 진열장 내의 배선공사에 단면적 0.75㎟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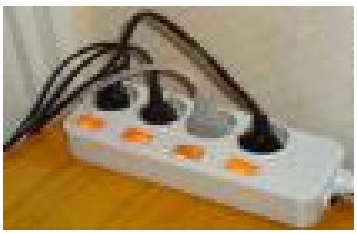
※ 근거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매뉴얼」<판단기준 제168조>

코드	전기 11	구분	전기설비- 옥내설비
점검항목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전선 외관 검사시 피복 손상이 없는 정상 상태이면 양호
	주의		○ 전선 외관 검사시 피복 손상이 있어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3. 전선 접속상태 및 피복손상 여부 <내선규정 제 2210-2> □ 서로 다른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 (1) 애자사용 배선과 다른 배선방법과의 사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배선방법의 배선상호를 접속하는 경우는 박스, 커플링 및 커넥터 등 적당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2) 서로 다른 배선 상호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부분을 손상하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접속개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코드	전기 12	구분	전기설비- 옥내설비
점검항목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옥내배선으로 비닐코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양호 ○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양호
	주의		○ 옥내배선으로 비닐코드가 사용된 경우 주의 ○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경우 주의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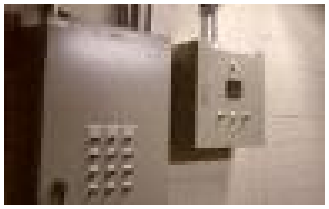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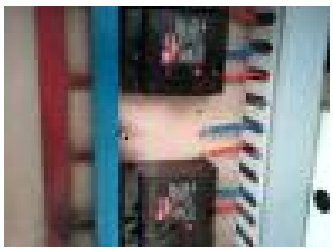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코드	전기 13	구분	전기설비- 옥내설비
점검항목	보행로 전선 노출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보행로에 전선이 노출되어있지 않아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양호
	주의		○ 보행로에 전선이 노출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코드	전기 14	구분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점검항목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전기설비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 및 및 개폐기(차단기)가 정상설치 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전기설비에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차단기)가 정상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전기설비에 지락이 생겼을 때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차단기) 의해 전로가 자동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판단기준 제 41조 및 내선규정 제 1475-2>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지락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지락 전용)

코드	전기 15	구분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점검항목	누전차단기 열화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누전차단기 육안점검시 열화 또는 기타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양호
	주의		○ 누전차단기 육안점검시 열화 또는 기타 손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코드	전기 16	구분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점검항목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개폐기 육안점검시 열화 또는 기타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양호
	주의		○ 개폐기 육안점검시 열화 또는 기타 손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개폐기 시설** (1) 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가.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 한다. 라.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의 자동 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코드	전기 17	구분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점검항목	개폐기 결선 상태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누설전류계 전류 측정 및 개폐기 육안 확인등 결선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양호
	주의		○ 누설전류계 전류 측정 및 개폐기 육안 확인등 결선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개폐기 시설**

(1) 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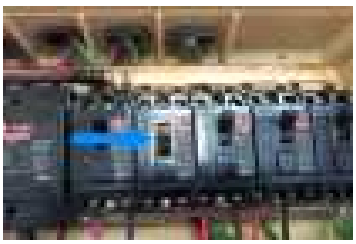
가.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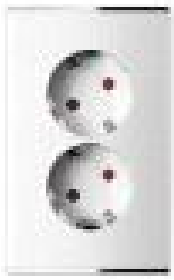
라.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의 자동 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코드	전기 18	구분	전기설비- 배전반
점검항목	배전반 커버 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밀봉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배전반에 대한 육안 점검시 배전함 커버가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양호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가 완전 밀봉되어 있을 경우 양호
	주의		❍ 배전반에 대한 육안 전검시 배전함 커버에서 손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의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가 완전 밀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8. 배 . 분전반 분진 . 부식 . 누수 여부** □ 배 · 분전반내 분진 · 부식 · 누수 등 충전부 유입에 의한 지락 및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코드	전기 19	구분	전기설비- 배전반
점검항목	배전반 접지용 콘센트 사용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배전반에 대한 접지상태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이 정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양호
	주의		○ 배전반에 대한 접지상태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여부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6. 접지시설 적정 여부

<판단기준 제 18조 및 33조>

□ 접지선은 아래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표〉 접지선의 굵기 선정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선의 굵기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피접지 시설물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에 따른 굵기 * 접지선 굵기 A=0.0496×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3.5 가스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의료기관 유형 가스분야 안전점검표

업체명		점검일시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점검책임자			(인)
점검참여자			(인)
			(인)
			(인)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비고	코드
		양호	주의	불량		
안전관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가스 01
	안전관리책임자 정기교육 이수 여부					가스 0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가스 03
배치기준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 유지 여부					가스 04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 적정 여부					가스 05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중간밸브(퓨즈콕) 및 호스의 설치 적정 여부					가스 06
	배관의 고정상태 적정 여부					가스 07
	배관의 방호조치 및 부식방지 도색 여부					가스 08
	가스누출 여부					가스 09
	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여부					가스 10
	배관이음부와 전기설비 안전거리 적정 여부					가스 11
	배관 재료 적정 여부					가스 12
연소기	보일러, 온수기설치(시공표지판 포함)와 배기통재료 적정 여부					가스 13
사고 예방 설비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적정 여부					가스 14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작동 여부					가스 15
	경계책·경계표시 여부					가스 16
	저장설비 환기시설 여부					가스 17
	가스검지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가스 18

코드	가스 01	구분	안전관리
점검항목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안전관리자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선임되었으면 양호
	주의		○ 안전관리자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안전관리자)**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코드	가스 02	구분	안전관리
점검항목	안전관리책임자 정기교육 이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최초 선임후 6개월 이내, 이후 매 3년 마다) 이수하였으면 양호
	주의		❍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최초 선임후 6개월 이내, 이후 매 3년 마다) 이수하지 않았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코드	가스 03	구분	안전관리
점검항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가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가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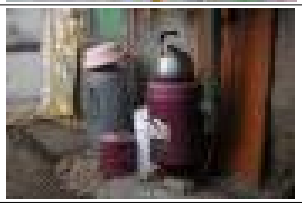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가입)**

○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보험가입)**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코드	가스 04	구분	배치기준
점검항목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 유지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스설비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화기취급장소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가스설비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화기취급장소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건축물 안에 설치한 고압배관은 제외한다) 및 저압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와 건축물 안에 설치한 배관이음매는 제외한다)는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 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코드	가스 05	구분	배치기준
점검항목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코드	가스 06	구분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점검항목	중간밸브(퓨즈콕) 및 호스의 설치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있으면 양호
	주의		○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압력조정기·기화장치·가스계량기(제34조에 따른 체적판매시설만 해당한다)·중간밸브·호스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코드	가스 07	구분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점검항목	배관의 고정상태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배관설비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고정돼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배관설비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고정돼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 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할 것).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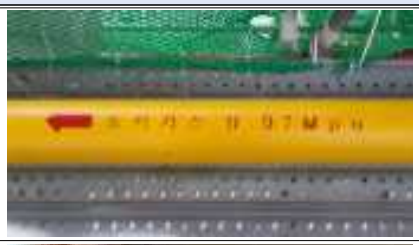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5)의 기준을 적용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관은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음의 기준에도 적합하게 할 것

코드	가스 08	구분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점검항목	배관의 방호조치 및 부식방지 도색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배관에 부식방지도장 및 방호조치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배관에 부식방지도장 및 방호조치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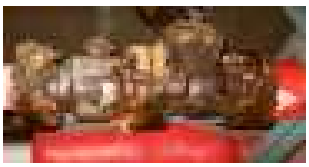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5)의 기준을 적용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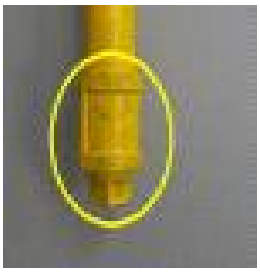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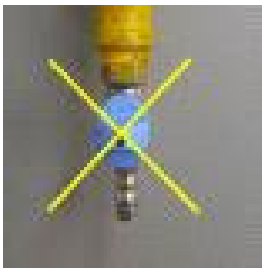
○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칠하고 표시할 것

코드	가스 09	구분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점검항목	가스누출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배관이 누출된 가스가 체류되지 않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 배관의 접합이 누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접합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배관이 누출된 가스가 체류되지 않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배관의 접합이 누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접합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滯留)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 ❍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코드	가스 10	구분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점검항목	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연결되지 않은 배관 말단부에 안전캡으로 막음 조치가 이루어져 있으면 양호
	주의		○ 연결되지 않은 배관 말단부에 안전캡으로 막음 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코드	가스 11	구분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점검항목	배관이음부와 전기설비 안전거리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배관이음부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전기설비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배관이음부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전기설비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등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코드	가스 12	구분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점검항목	배관 재료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한 성분이면 양호
	주의		❍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한 성분이 아니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배관의 안전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코드	가스 13	구분	연소기
점검항목	보일러, 온수기설치(시공표지판 포함)와 배기통 재료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스 보일러·가스온수기 또는 시공표지판이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면 양호 ❍ 배기통의 재료가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이면 양호
	주의		❍ 가스 보일러·가스온수기 또는 시공표지판이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배기통의 재료가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가스 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자·보일러 및 시공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부착할 것

코드	가스 14	구분	사고예방설비
점검항목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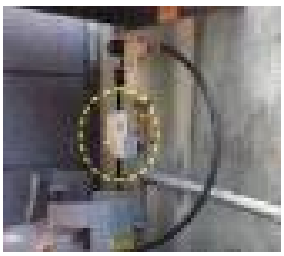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경보설정치)**

①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코드	가스 15	구분	사고예방설비
점검항목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작동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양호
	주의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②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

③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코드	가스 16	구분	사고예방설비
점검항목	경계책·경계표시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스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가 되어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이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가스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가 되어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시설이 저장능력이 100kg 이하인 용기에 의한 시설이거나 용기보관실이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코드	가스 17	구분	사고예방설비
점검항목	저장설비 환기시설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 적절한 환기시설이 갖추어 졌으면 양호
	주의		○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 적절한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코드	가스 18	구분	사고예방설비
점검항목	가스검지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가스검지부가 가스가 누출 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가스검지부가 가스가 누출 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6 승강기분야 안전점검표 및 점검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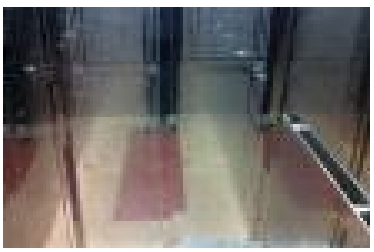
의료기관 유형 승강기분야 안전점검표

업체명		점검일시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점검책임자			(인)
점검참여자			(인)
			(인)
			(인)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비고	코드
		양호	주의	불량		
엘리베이터	이용자 안전수칙 부착 여부					승강기 01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여부					승강기 02
	문 닫힘 안전장치 작동상태 적정 여부					승강기 03
	비상 통화장치 작동 및 통화상태 적정 여부					승강기 04
에스컬레이터	승장강 주의표시 부착 여부					승강기 05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여부					승강기 06
	스커트 가드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승강기 07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승강기 08
	콤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승강기 09
	핸드레일 표면 손상 여부					승강기 10

코드	승강기 01	구분	엘리베이터
점검항목	이용자 안전수칙 부착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엘리베이터 내부에 이용자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으면 양호 ❍ 이용자 안전수칙에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엘리베이터 내부에 이용자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이용자 안전수칙에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하생략)

코드	승강기 02	구분	엘리베이터
점검항목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안전검사에 합격한 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으면 양호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위치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안전검사에 합격한 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위치가 이용자가 잘 볼 수 없거나 훼손되어 있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코드	승강기 03	구분	엘리베이터
점검항목	문 닫힘 안전장치 작동상태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문닫힘안전장치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정상이면 양호 ○ 문닫힘 동작시 사람 또는 물건이 끼이거나 끼이려고 할 때 반전하여 열리면 양호
	주의		○ 문닫힘안전장치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 주의 ○ 문닫힘 동작시 사람 또는 물건이 끼이거나 끼이려고 할 때 반전하여 열리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1. 전기식 엘리베이터

1.2 출입문 안전성능 판정기준

1.2.7 문끼임방지성능

자동으로 동력에 의해 문을 닫는 방식에서의 문닫힘안전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7(1) 견고성

문닫힘안전장치(세이프티슈·광전장치·초음파장치등)는 카 문 또는 승강장 문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1.2.7(2) 작동성능

① 문닫힘 동작시 사람 또는 물건이 끼이거나 끼이려고할 때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② 문닫힘안전장치 연결전선이 끊어지면 문이 닫히지 않아야 한다.

③ 세이프티슈 방식의 문닫힘안전장치에서 슈는 끼임이나 간섭없이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코드	승강기 04	구분	엘리베이터
점검항목	비상 통화장치 작동 및 통화상태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비상 통화장치가 작동되고 통화상태가 적정하면 양호
	주의		○ 비상 통화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통화상태가 적정하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1. 전기식 엘리베이터

1.7 엘리베이터 기능저하 관련 전반 판정기준

1.7.12 비상통화장치

①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카 내에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경비실 이외에도 중앙관리실이나 전기실 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카 내와의 통화장치를 경비실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카 내에서 호출이 있을 때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버저와 경광등이 경비실 외부 가까이 또는 기준층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④ 통화장치는 지속적인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이 장치는 정전시에도 유효하여야 한다.

코드	승강기 05	구분	에스컬레이터
점검항목	승강장 주의표시 부착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승장강 주의표시가 기준(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승장강 주의표시가 기준(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승강기검사기준」 4.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4.3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4.3.2(21) 이용자의 주의표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주의표시를 위한 표시판 또는 표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승강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확실히 부착하여야 한다.

② 주의표시는 80mm × 100mm 이상의 크기로 <그림 5>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5)



구 분		기준규격 (mm)	색 상
최소 크기		80×100	-
바탕		-	흰색
	원	40×40	-
	바탕	-	흰색
	사선	-	적색
	도안	-	흑색
⚠		10×10	녹색(안전) 황색(위험)
안전, 위험		10×10	흑색
주의 문구	대	19 Pt	흑색
	소	14 Pt	적색

코드	승강기 06	구분	에스컬레이터
점검항목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안전검사에 합격한 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으면 양호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위치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되고 있으면 양호
	주의		❍ 안전검사에 합격한 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위치가 이용자가 잘 볼 수 없거나 훼손되어 있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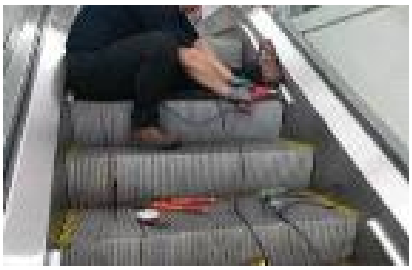
❍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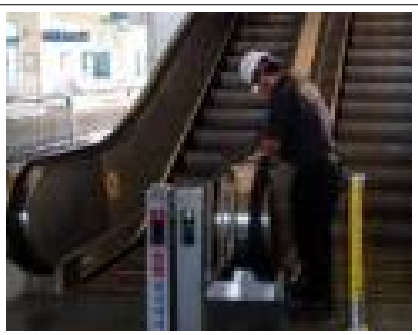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코드	승강기 07	구분	에스컬레이터
점검항목	스커트 가드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스커드가드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면 양호 ○ 스커트가드스위치가 정상작동되면 양호
	주의		○ 스커드가드가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스커트가드스위치가 정상작동되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5.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5.1 에스컬레이터 기능저하 관련 전반 판정기준** **5.1.12 스커트가드와 디딤판 틈새** - 스커트가드와 디딤판과의 틈새는 승강로의 총길이에 걸쳐서 한쪽이 4㎜ 이하이어야 하고, 양쪽을 합쳐서 7㎜ 이하이어야 한다. **5.1.13 스커트가드스위치** - 스커트가드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무빙워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코드	승강기 08	구분	에스컬레이터
점검항목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이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면 양호 ○ 디딤판 위의 안전마크가 황색 또는 적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양호
	주의		○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이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 디딤판 위의 안전마크가 황색 또는 적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5.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5.1 에스컬레이터 기능저하 관련 전반 판정기준

5.1.11 디딤판 상호 틈새

- 디딤판 상호간의 틈새는 승강로의 총길이에 걸쳐서 6㎜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무빙워크의 천이구간은 8mm 이하로 할 수 있다.
-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부에서 수평부로 전환될 때 상호 간섭으로 인하여 디딤판이 들려 올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지지 않아야 한다.

5.1.17 디딤판 황색선

- 디딤판 위의 안전마크는 황색 또는 적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5.1.18 디딤판 들뜸 검출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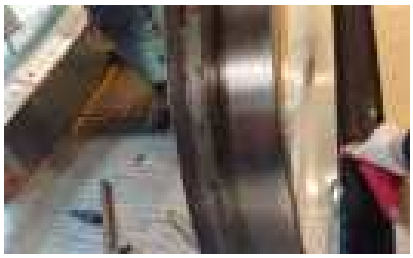
- 승강로의 상하부 좌우측에 고정되어 디딤판과 가이드레일 사이에 이물질 등이 끼이는 경우에 디딤판이 들려지는 상태에서의 운행이탈을 감지하여 디딤판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코드	승강기 09	구분	에스컬레이터
점검항목	콤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승강장에서는 물체가 쉽게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디딤판과 콤(Comb)의 물림량이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면 양호
	주의		○ 승강장에서는 물체가 쉽게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디딤판과 콤(Comb)의 물림량이 관련규정(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5.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5.1 에스컬레이터 기능저하 관련 전반 판정기준** **5.1.9 콤** ① 승강장에서는 물체가 쉽게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디딤판과 콤(Comb)의 물림량은 6mm 이상(벨트방식의 경우에는 4mm 이상)이어야 하고, 맞물리는 부분의 틈새는 4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디딤면 구조상 콤브(Comb)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 승강장에 물체가 끼었을 때 작동하는 정지스위치의 설치상태는 견고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코드	승강기 10	구분	에스컬레이터
점검항목	핸드레일 표면 손상 여부		

		참고사항	점검기준
점검결과	양호		○ 핸드레일의 난간과 손잡이의 설치상태가 안전하고 견고하면 양호 ○ 핸드레일의 표면에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양호
	주의		○ 핸드레일의 난간과 손잡이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지 않으면 주의 ○ 핸드레일의 표면에 손상이 발견되면 주의
	불량		

점검근거 및 유의사항

□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5.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5.1.7 핸드레일

① 이동식 핸드레일의 경우, 운행 전구간에서 디딤판과 핸드레일의 속도차는 0 ~ 2% 이하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핸드레일은 하강운전중 상부 승강장에서 수평으로 약 147N 정도의 사람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고정식 핸드레일의 경우에 난간과 손잡이의 설치상태는 안전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④ 핸드레일의 외피 및 내피는 파단이나 핸드레일구동롤러 등에 의해 마찰 시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5.1.8 핸드레일인입구 안전장치

① 이동식 핸드레일의 인입구에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핸드레일 인입구 정지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② 핸드레일 인입구안전장치의 감지부는 상하, 좌우 방향으로 약하게 흔들었을 때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록] 의료기관 유형 조치항목

의료기관 유형 조치항목			
업체명		점검일시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점검책임자			(인)
점검참여자			(인)
			(인)
			(인)

코드	조치대상 항목 설명	예 산	조치예정일	비 고